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022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등	2

I. 개요

1.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02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허성무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4. 11. 28.
- (3) 회 부 일 : 2024. 11.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등에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운영사업이 2023년 종료되었으나, 제로페이 운영사업은 지난 5년간 50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맹점 수가 2024년 1월 기준 182만개에 이르렀고, 그간 온누리상품권 거래와 지역사회 가맹점 결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므로 제로페이 운영 고도화를 통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하여도 소득공제율을 40%로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등

가. 제도 개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30%¹⁾,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함.

또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를 별도로 적용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율		공제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① 신용카드	15%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②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③ 전통시장	40%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200만원
④ 대중교통	40%	전통시장 대중교통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소득공제율		공제 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⑥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 등	30%		도서 등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10차례 연장되어 2025년말 일몰 예정임.²⁾ 2005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신용카드 사용 유도차원의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어 공제율을 소폭 인하하였으며,³⁾ 2007년에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공제문턱을 총급여액의 20% 초과로 상향하고, 공제적용률을 20%로 증가시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높여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였음.⁴⁾ 이후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 인상(2009년 개정),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1년 개정),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3년 개정), 서민 중산

2) 최초 도입 시 적용기한은 2002. 11. 30.이었으나 2005. 11. 30. ⇒ 2007. 11. 30. ⇒ 2009. 12. 31. ⇒ 2011. 12. 31. ⇒ 2014. 12. 31. ⇒ 2016. 12. 31. ⇒ 2018. 12. 31. ⇒ 2019. 12. 31. ⇒ 2022. 12. 31. ⇒ 2025. 12. 31.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종전 20%에서 15%로 하향조정함.

4) 이를 통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늘려야하며, 일단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음. 또한 과표양성화와 무관한 지출 또는 중복공제 성격의 지출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상에서 배제하였음.

충 세부담 경감을 위한 급여수준별 한도 조정(2016년 개정), 도서
공연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8년 개정) 등 소비심리 개선
과 건전소비 문화 장착,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
이 이루어졌음.⁵⁾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조 8,537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3조
9,458억원에 달하였으며, 2024년에는 4조 1,183억원, 2025년에는 4
조 3,6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지출액	18,537	21,176	22,553	24,698	31,882	31,675	39,458	41,183	43,69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5) “2018 조세특례심층평가(I)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획재정부, 2018

나.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사용분 소득공제 신설(허성무의원안)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사용분 소득공제 신설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전통시장</td><td>40%</td></tr><tr><td>- 대중교통</td><td>40%</td></tr><tr><td>- <신설></td><td></td></tr><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td><td>30%</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신설>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전통시장</td><td>40%</td></tr><tr><td>- 대중교통</td><td>40%</td></tr><tr><td>-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td><td>40%</td></tr><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td><td>30%</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4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신설>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4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한정	30%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공제 한도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h colspan="2">공제 한도</th><td></td><td></td></tr><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 rowspan="3">추가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2">300만원</td><td>200만원</td></tr><tr><td>대중교통</td><td></td></tr><tr><td>문화비</td><td></td><td>-</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	○ 공제 한도 - (현행과 같음)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h colspan="2">공제 한도</th><td></td><td></td></tr><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 rowspan="4">추가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만원</td><td>200만원</td></tr><tr><td>대중교통</td><td></td></tr><tr><td>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분</td><td></td></tr><tr><td>도서 등</td><td>-</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분		도서 등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분																																											
	도서 등	-																																										

* 허성무의원안 2024. 11. 28. 제출(의안번호 6022)

☐ 개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6)에 따른 소상공인과 그 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유통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결제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결제수단(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⁷⁾에 대한 공제율을 40%로 상향함으로써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⁸⁾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소상공인간편결제는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로, 카드사 등을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어 수수료가 낮는데, 소상공인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율은 0.5% 이내로 하 되, 전체 가맹점 중 대부분(92%)을 차지하는 연매출액 8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0%의 수수료율을, 8억원~12억원 이하는 0.3% 이내로 적용하고, 그 외 일반 가맹점은 민간 자율로 결정하고 있음.

6)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7) 동 개정안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정의는 의안번호 2206023호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신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동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임.
- 8) 중소벤처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구축과 활성화를 추진해왔으며,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들의 출연으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설립되어 현재 제로페이를 운영중임.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적용 수수료율]

소상공인 가맹점(연매출액 기준)			일반 가맹점
8억원 이하	8억원~12억원	12억원 초과	
0%	0.3%	0.5%	민간 자율(현재 1.2%)

자료 : 제로페이 홈페이지(www.zeropay.or.kr)

□ 이와 같이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은 그 결제 수수료가 낮은 장점 때문에 소상공인 가맹점 지원을 위해 정책적으로 그 사용분에 대한 30%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⁹⁾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상공인간편결제는 현재 45개 은행 및 전자금융업자 등을 통해 결제시스템이 제공되고 있으며¹⁰⁾, 최근 이용실적을 보면 가맹점 수는 2025년 초 1,976,888 개로, 결제실적은 2019년 767억원에서 2025년 1조 713억원으로 증가하였음.

9)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삭제 <2013. 1. 1.>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10) *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SC제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등

*전자금융업자 :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네이버, 신세계아이앤씨, NHN페이코, 하나카드,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정보통신, 쿠팡, 비바리퍼블리카, 인스타페이, KICC, 엔페이, SSG페이 등

[최근 제로페이 이용실적 추이]

구 분	2019년	2025년
가맹점 수	32만 개	197.7만 개
결제실적	767억원	1조 713억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사용분에 대해 40%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소득공제율 상향을 통해 소상공인간편결제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 카드의 경우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사회 문제화되어 그동안 수차례 카드 수수료 인하조치가 이루어진 결과¹¹⁾ 현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8~1.6%, 체크카드 0.5~1.3%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의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

[매출액 구간별 수수료율]

연매출액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율)
3억원 이하	0.8%	0.5%	0%
3억원~5억원 이하	1.3%	1.0%	0%
5억원~10억원 이하	1.4%	1.1%	8억원 이하 0%
10억원~30억원 이하	1.6%	1.3%	8억원~12억원 이하 0.3%
			12억원 초과 0.5%

자료: 금융감독원

11) ('12년) 매출액 2억원 이하 1.8%→1.5%

('15년) 매출액 2억원 이하 1.5%→0.8%, 2~3억원 2.7%→2.0%→1.3%

('17년) 매출액 2~3억원 1.2%→0.8%, 3~5억원 2.5%→1.3%

('18년) 우대구간 확대 연매출 5억원 이하→30억원 이하, 신설 우대구간의 수수료율 인하

따라서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세제혜택은 소비자의 지급수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¹²⁾, 개정안처럼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다른 결제수단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동 시스템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둘째, 최근 소상공인간편결제의 이용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이용실적은 크지 않은 문제가 있음. 2019년 767억원에서 2025년 1조 713억원으로 결제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체 가맹점 중 82%가 소상공인간편결제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간편결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이용실적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반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함.

첫째,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하여 현금·직불카드 등 유사한 다른 결제수단 사용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결제수단 및 그 이용자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면이 있음. 즉,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은 계좌에서 즉시 인출¹³⁾된다는 점에서 직불

12) 2018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간 공제율 격차 확대가 근로소득자의 지급수단 이용행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 소득구간에 걸쳐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간 공제율 격차가 커질 때 직불·체크카드 사용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2018. 9., pp. 145~157.)

1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은 QR코드를 활용한 계좌이체(직불) 기반의 지급결제 플랫폼이 적용됨.

카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하여만 높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자번호를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¹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해 대금을 결제하면 소상공인간편결제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바,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14) 소상공인이 아니라도 사업자번호를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누구나 소상공인 간편결제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음(일반가맹점).